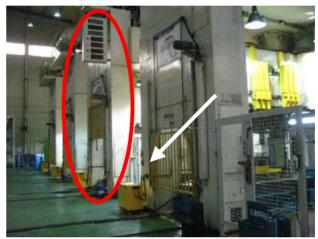
# 프레스 금영 쪼쟁짝업 도중 미임

### 재 해 개 요

'14. 8월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 사업장의 프레스 자동연속 성형 라인에서 외부 금형업체 소속 피재자가 라인내부로 들어가 프레스 금형 내 스크랩을 제거하던 도중 작동중이던 프레스의 상금형과 하금형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

### 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프레스)

재해 발생장소

## 재해발생상황

- 재해발생 프레스 자동연속성형라인은 800톤-600톤-400톤-400톤의 프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재해는 2번째 600톤 프레스의 금형작업 도중 발생함
  - 프레스 금형에서 스크랩 일부가 분리되지 않자 피재자가 금형용 후크핀으로 스크랩을 제거하는 도중 발생

#### ※기인물(프레스) 사양

- 형식 : 기계식 마찰클러치식 - 스트로크(행정길이): 600mm

- 압입능력 : 800톤

- SPM(분당 행정수) : 최대24

- 자동으로 운전중인 프레스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작업을 실시함
- 프레스 측면에는 작업자 접근방지를 위한 방호울과 연동장치(리미트스위치)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능 무효화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함

## 재해발생 원인

- 프레스 위험구역 접근방지를 위하여 측면에 방호울과 연동장치(리미트스위치)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능을 무효화한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실시함
- ㅇ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프레스 금형 수리작업을 실시함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프레스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설치한 방호장치(측면방호울 및 연동장치)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함
- 프레스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

## 관련 법규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(프레스 등의 위험방지)
  -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(방호장치의 해체 금지)
  - ① 사업주는 기계·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.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  -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·수송기계·건설기계 등의 정비·청소·급유·검사·수리·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.